

2006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

- 재정경제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2006년도에 89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운용할 예정입니다.(2005년 96개 품목에서 7개 품목 축소)
- 주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원품목(LCD 제조장비 등 10개 품목), 기초원자재(원유, 철광석 등 12개 품목), 사료용 원료(옥수수 등 13개 품목) 등입니다.
- 국제가격이 대폭 하락한 품목은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가격이 상승하고 연관산업이 많은 품목에 대하여는 현행 할당관세를 유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수입가격 상승, 중소기업 원료난 해소, 원료와 완제품간 또는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필요 품목 등 10개 품목은 신규 적용했습니다.
- 2006년도 조정관세 대상품목은 18개로, 통상마찰방지 등을 위한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라 기존 19개 품목 중 냉동새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8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영적용 품목은 2006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참고 : 표 1, 2)

- 농수산물(사료용포함)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6년도 할당관세 운용

할당관세〔割當關稅, quota tariff〕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때 사용된다. 적극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한다.

수입할당제와 관세제도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한 것으로, 두 제도가 개별적으로 실시될 때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특정물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 요구와 수요자의 수입장려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특정상품에 대한 국내총생산량과 총수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관세감축과 함께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세할당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시행하는 관세로, 2006년도에는 89개 품목이 과세대상으로 지정되었다.

□ 운용 방향

기본운용방향

- ◇ 최근 고유기에 따른 기업 및 가계부담 완화,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필요성 등 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한 신속적인 탄력관세 운용

○ 품목선정 및 세율책정 기준

〈신규품목〉 수입가격이 급등하거나 현저한 세율 불균형의 경우 등 필요 최소한 범위내에서 반영 (10개)

〈기존품목〉 전년대비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지원이 중복되는 품목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96개 품목 중 17개 품목 제외 및 9개 품목 세율 인상 적용)

□ 2006년 할당관세 세부 조정내역

○ 할당관세 신규적용 품목 : 4개

순번	품목	현행관세율	2006할당	근거및사유
1	설탕	50	40	역관세 해소(제과 3%) 및 세율불균형 시정(과당 3%)
2	아몬드	5	5	수입가격 상승(51.4%) 및 식품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3	유채조유	10	5	유사물품(옥수수유 3%)과 세율불균형 시정
4	정제유채유	30	10	유사물품(해바라기유 10%)과 세율불균형 시정

○ 할당관세 인하품목 : 1개

순번	품목	실행	2005할당	2006할당	근거및사유
1	완두콩(사료용)	5.5	2	0	축산농가 지원

○ 할당관세 인상품목 : 9개

품목	실행	2005할당	2006할당	근거및사유
대두(채유 및 대두박용)	5	0	1	수입가격 하락
옥수수(가공용)	3	1	2	수입가격 하락
맥주맥	30	15	20	소비억제(주정용)

○ 한국식품공업협회 추천 품목

관세율 표번호	품명	규격등	세율(%)	한계수량	추천기관
1802	아몬드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한다.	5% → 5%	5천 3백메트릭톤	한국식품 공업협회
3302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식품공업용 또는 음료공업용의 것에 한한다. 다만, 음료제조용 조제품을 제외한다.	5% → 5%	2천 4백메트릭톤	
3501	카세인·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 유도체	커피크리머제조용에 한한다.	20% → 5%	7천 5백메트릭톤	

2. 2006년도 조정관세 운용

조정관세〔調定關稅, adjustment duties〕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산업구조가 변동되어 물품간 세율의 균형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국민보건·환경보존·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이 증가되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을 때 사용된다.

수입자유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제거하고자 하는 관세로 한국에서는 1984년부터 시행되었다.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수입자유화 품목에 대한 수입이 급증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자유화 수용태세가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까지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기본관세에 100% 이내의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공포·시행하며 적용기한은 보통 1년이다.

□ 운용 방향

기본운용방향

- 외국과의 통상마찰소지 방지, 국내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단계적 조정관세 축소방침에 따라 지원범위 축소
- 다만, 해외어장의 인정적 개척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금적 현행세를 유지

○ 품목선정 및 세율책정 기준

〈신규품목〉 불수용 원칙

〈기존품목〉 현행 조정 관세율의 10% 일률 삭감 원칙

다만, 해외어장 개척 등 산업보호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고 통상마찰 대상이 아닌 경우는 현행 유지

□ 2006년 조정관세 세부 조정내역

〈제외 품목(1개)〉 냉동새우

〈세율 인하(8개)〉 메주, 활농어, 냉동꽂치, 냉동민어, 냉동오징어, 새우젓, 냉동홍어

〈현행 유지(10개)〉 바나나, 당면, 찐쌀, 혼합조미료, 활민어, 활뱀장어, 활돔, 냉동명태, 표고버섯

○ 제외 및 세율인하 품목 상세 내역

품 목	기 본	2005 조정	2006 조정
냉 동 새 우	20	27	20(기본)
메 주	8	20	18
활 농 어	10	45	40
냉 동 꽂 치	10	40	36
냉 동 민 어	10	70	53
냉 동 오 징 어	10	27	24
새 우 젓	20	55	50
냉 동 홍 어	10	30	27

〈참고 1〉 2006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신·구세율 대비표)

(단위 : %, 관세율)

관세율 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현 행	개 정	증 감
J713	완 두(사료용)	30	2	0	-2
J714	매 니 옥 칩(주정용)	20	10	10	-
J714	매 니 옥 펠 리 트(사료용)	7	0	1	+1
* J802	아 몬 드	8	-	0	(신규)
1001	밀(사료용)	3	0	0	-
1001	밀(제분용)	3	1	1	-
1003	맥 주 맥	30	15	20	+5
1003	겉 보 리(사료용)	0	2	2	-
1005	옥 수 수(사료용)	5(3)	0	0	-
1005	옥 수 수(가공용)	5(3)	12	+	1
1107	맥 아	30	10	10	-
1201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5(3)	0	1	+1
1214	알 팔 과(사료용)	20	1	1	-
1214	근채류(사료용및버섯재배용)	5/20	2	2	-
2308					
1514	유 체 조 유	10	-	8	(신규)
1514	유 체 정 제 유	30	-	10	(신규)
1518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8	0	-	(제외)
1701	정 제 당	50	-	40	(신규)
2302	밀 기 울(사료용)	0	2	2	-
2306	면 실 박(사료용)	0	2	2	-
2306	야 자 박(사료용)	0	2	2	-
2306	팜 박(사료용)	0	2	2	-
2510	천 연 인 산 칼슘	1	0	-	(제외)
* 3302	방 향 성 물 질 의 혼 합 물	8	0	0	-
* 3501	카 세 인 · 카 세 인 산 염	20	8	8	-

* * 추천기관 : 한국식품공업협회

<참고 2> 2006년 조정관세 적용품목(신·구세율 대비표)

(단위 : %, 관세율)

관세율 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현 행	개 정	증 감
J301	활 뱀 장 어	10	30	30	-
J301	활 돛	10	45	45	-
J301	활 농 어	10	45	40	-5
J301	활 민 어	10	36	36	-
J303	냉 동 명 태	10	30	30	-
J303	냉 동 풍 치	10	40	36	-4
J303	냉 동 홍 어	10	30	27	-3
J303	냉 동 민 어	10	70	53	-7
J306	냉 동 새 우	20	27	.	(제외)
J306	새 우 젓	20	55	50	-5
J307	냉 동 오 징 어	10	27	24	-3
J709	표 고 버 섯	30	45	45	-
J712					
J803	바 나 나	30	40	40	-
1902	당 면	54	54	5	-
1904	찐 쌀	55	55	0	-
2103	혼 합 조 미 료	54	54	5	-
2103	메 주	5	20	18	-2